

NAJU
*Web
Contents*

2021년 09월 25일 15시 41분

목차

목차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3
관련법	3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3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3
처리절차 : 즉시처리(3시간 이내)	3
처리방법	3

관련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영업의 신고 등)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 방문, 단단계,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처리절차 : 즉시처리(3시간 이내)

민원인 내방(위생과) ⇒ 구비서류 검토 ⇒ 접수(민원실) ⇒ 처리(위생과)

처리방법

구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축물의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 영업설비개요서	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 영업설비개요서 위탁생산계약서
시설기준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시설 (보관 시)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시설 (보관 시)
수수료	수입증지 28,000원	수입증지 28,000원

NAJU

Web Contents

